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방법)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계약의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 법령에 규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따라 비용 부담액을 청구한다.
2. 일반 대상자 또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외의 시간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3. 장기요양 급여 부분 이외의 급여제공에 대해 보호자와 요양요원의 합의로 초과 근무 또는 차량을 이용한 경우 임의계약으로 보고 센터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보호자가 직접 요양요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보호자가 기관 개입을 요청 할 경우 예외로 한다.)
4. 비용은 재가 장기요양 급여 기준표 및 보험요율에 따라 부과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12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내역서를 통보한다
6.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이용 월 다음달 15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미납부 시 다음 달 비용과 합산하여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한다.
7.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연말에 국세청 홈텍스 통보한다.) 이용료 미납 시 1차 미납금 독촉 통보하며, 그 후로 1주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8.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 또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 후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부한다.
10. 이용료가 과도하게 청구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과 동일한 통장으로 환급하며, 이를 납부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한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보호자)권리

-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 ② 이용자가 부담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기관의 의무는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로 포함된다.
- ④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권리
- ⑤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연령·종교·정치적신념·장애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보호자)의무

-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가 있다.
- 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⑦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⑧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주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

- ①. 급여 계약 내용 범위 준수
-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보호자)에게통보
- ③.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④.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대한 비밀 유지
-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 ⑦.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해제 방법)

- 가.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나.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거나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변경된 비용은 문서로 안내하며, 보호자 동의하에 실행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내용

- 1.요양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정서지원, 신체기능유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2.목욕 -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되어있는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나. 비용의 부담 -이용자는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한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 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자	1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9%
건강보험료 순위 0~25%	6%
기초수급권자	0%

2026년 재가 장기요양 수가 계산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

방문목욕	60분 (가정내 목욕)	50,100원	60분 미만 (가정내 목욕)	40,0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 방문간호

방문간호	15분~30분미만 /42,880원	30~60분미만/53,770원	60분이상 /64,690원
------	--------------------	------------------	----------------

가인방문요양센터